

서울신학대학교 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시행 지침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교육봉사활동은 예비교원의 교직적성 함양 및 공익을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인정기관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학교의 보조 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또는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중 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및 보육학과 교직이수자로 한다.

제4조 (이수시기 및 절차) ① 기독교교육과와 유아교육과는 1학년부터, 신학과와 보육학과는 교직선발 이후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생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그 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한 교육봉사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매 학기말고사 직전 주 까지 관계 서류(서식 #2~서식#5) 를 작성하여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봉사활동은 8학기(졸업학기)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학기 및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이수시간의 누적관리) 교육봉사활동 이수생의 봉사시간은 학과에서 누적관리하며, 필요시 해당학과에서는 추가로 이수실적에 따른 증빙을 해당 이수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은 매학기 개설하며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7조 (학점인정)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0시간 이상을 충족할 경우 2학점을 부여한다.

제8조 (성적평가) ① 교육봉사활동 성적평가는 “P”(pass) 혹은 “F”(fail)로 하며 과목명은 “교육봉사활동”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한다.

② 성적평가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F”로 처리한다.

1. 교육봉사활동 기관장의 실습평가를 평균하여 60점미만이 된 경우

2. 60시간에 미달 한 경우

③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9조 (인정기관) ①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봉사활동 불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4.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5. 타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6.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③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 하나 해당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인정기관의 범위는 해당 학과 교수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교육봉사활동의 인정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학칙적용) 이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지침의 개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 봉사활동 인정범위

1. 교육실습 관련 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에서의 학교행사지원,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하교지도,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기타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 특별활동
- 수업보조교사
-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② 학교행사 지원

- 운동회 ▪ 현장학습 ▪ 소풍
- 학예회 등 각종 행사활동 지원
-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③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 방과후 수준별 지도 등
- 학습부진 학생과의 1:1 멘토교사제 운영

④ 방과후 학교교사

⑤ 등하교지도

⑥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 독서실 ▪ 컴퓨터실 ▪ 과학실 ▪ 체육관 등

2.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사회 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교육봉사활동,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등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지원,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

[서식#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소 속		학과		학년		학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현 주소			E-mail :			

교육봉사활동 기 관 명						
봉 사 기 간	학기중		방학중		총봉사 시간	시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봉 사 기 관 주 소						
봉 사 기 관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 ※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학중 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은 결과보고서를 개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 교육봉사활동은 7차학기 방학때까지 이수 완료하여야 함.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봉사기관 :

봉사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학 과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서울신학대학교

[서식#4]

교육봉사활동 출근부

서울신학대학교 학과(부) : _____ 학번 : _____ 성명 : _____

봉사기간 :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 ____ 월 ____ 일 (총 ____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일	/	/	/	/	/	/	/
활동시간							
확인							
월/일	/	/	/	/	/	/	/
활동시간							
확인							
월/일	/	/	/	/	/	/	/
활동시간							
확인							
월/일	/	/	/	/	/	/	/
활동시간							
확인							
월/일	/	/	/	/	/	/	/
활동시간							
확인							

교육봉사기관 책임자 : _____ (인)

[서식#5]

교육봉사활동 내용

월/ 일 (요일)	교육봉사활동 내용	반성 및 소감

(직인)